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598
----------	-------

발의연월일 : 2024. 3. 5.

발 의 자 : 김은희 · 김희곤 · 박덕흠
정경희 · 유경준 · 황보승희
송석준 · 지성호 · 정우택
태영호 · 이인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2월부터 피고인의 합의 중용 및 협박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개인정보를 몰라도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등의 정보를 통해 피해자(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약물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와 성범죄 · 성폭력 · 스토킹 사건 등에서 피해자가 엄벌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피해자(피공탁자)의 의사확인 없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판부의 선고 직전에 공탁을 하여 일부 피고인이 형의 감면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가중한 고통을 주고 있음.

이에 형사공탁을 해당 변론 종결 기일 20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법원은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고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해당”을 “변론 종결 기일 20일 전까지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전화, 전자우편,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지 받은 내용을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고지한 형사공탁에 대하여 변론 종결 기일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사공탁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 ----- ----- ----- ----- -----변론 종결 기일 20일 전까지 해당--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전화, 전자우편,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지받은 내용을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고지한 형사공탁에 대하여 변론종결 기일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탁자 또

④ · ⑤ (생략)	<u>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u> ⑥ · 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	--